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WHO 제 8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8) 회의 참석

☐ 과제명

- 2023 팬데믹 조약의 주요 쟁점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출장기간

- 2024.02.18.(일) ~ 2024.02.27.(화)

☐ 출장국가(도시)

- 스위스 제네바

☐ 출장자

- 김수경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02.18.	인천/제네바	-	-	인천 출발/제네바 도착
02.19.-02.26	제네바	WHO 본부	-	WHO 제 8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8)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02.26.-02.27	제네바/인천	-	-	제네바 출발/인천 도착

2

출장 주요내용

※ 대표단에게만 오픈된 세션(Closed session)은 간략하게만 정리, 온라인으로 오픈된 세션(Open session)은 상세 내용 정리함

①	인천 출발/제네바 도착
일 시	2024.02.18.(일)
장 소	인천국제공항/제네바국제공항
참석자	-
인천국제공항 출발, 제네바 도착 및 숙소 이동	
②	WHO 제 8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8)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2.19.(월)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 테드로스 사무총장 모두발언 - WHO헌법은 6개월만에 작성됨. 개인적으로는 팬데믹 조약이 2024년 5월까지 협상 및 합의를 하기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았다는 현실적·낙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여태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봄.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여러 가지 도전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많은 회원국간 공감대를 한 사항은 무엇이며 견해 차이가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한 것은 분명한 진보임. - 2024년 5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부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핵심임. 팬데믹 기간동안 발생한 접근성, 형평성 문제는 이론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 문제였음. 이같은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한 커뮤니티의 말을 들어봄으로써 많은 성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임. 2)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적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람. 바이러스는 글로벌 공동의 적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미래 팬데믹을 예방하는 것임. 공동의 선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더 큰 공동의 선으로 나아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임. 3) 경쟁보다는 타협과 협력을 통해 상생의 해결책을 찾기를 바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경쟁이 아닌, 글로벌 사회가 공동의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임. 4) 타협을 위해서는 각 회원국 위급 지도자의 참여를 당부드림. 5) 본 팬데믹 조약과 관련하여 WHO나 사무총장이 자유를 침해, 봉쇄를 명령하는 등 각국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오보가 있었음. 기 배포된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 팬데믹 조약 협상은 각국의 법령, 각국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국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길 바람 ○ Plenary session: 선진국 그룹(일본, 영국, 미국 등)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주장. 개도국 그룹은 PABS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서 형평성을 촉진해야 함을 강조함. 러시아는 5월이라는 기한과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convention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멕시코, 아메리카지역 대표발언) 아메리카지역은 INB와 WGIHR 과정에 대한 약속을 거듭강조하며,	

합의된 시한인 2024년 5월을 달성하기 위해해 건설적으로 노력할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형평성은 INB와 WGIHR 회원국이 구체적 약속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이자 목표가 되어야 함. 지리적으로 다양한 생산역량, 효과적 예방 및 감시역량, 탄력적 보건의료시스템, 다자간시스템을 통한 병원체 및 이익의 공유를 조약 내 포함함으로써 보건의료제품에 대한 적시의 공평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 일부 주요 문제에 대해 회원국간 입장이 상이함을 인식하지만, 합의 달성을 위해 향후 회의에서 생산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음. 아메리카지역은 개발 수준, 규모, 국가적 맥락이 서로 다른 국가로 구성되어있으나 1902년 PAHO설립 등, 우리지역은 공중보건 분야에서 100년 이상 협력해온 역사가 있음. 두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다자주의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지난 팬데믹동안 목격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집단적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임

- (이집트, 형평성그룹 대표발언) 형평성그룹의 29개 회원국은 팬데믹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의 다양화, 기술 접근성 강화가 팬데믹 관련 형평성 개념을 작동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봄. 이같은 관점에서 다음을 촉구함 1) 접근성 및 이익공유 시스템(ABS)은 본 조약의 핵심임. ABS를 통해서만 선진국-개도국 간 경쟁의 장을 완화할 수 있으며 공평한 공중보건대응이 가능함. 2) 팬데믹 관련 제품의 현지·지역 생산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의 전달도 중요함 3) 회원국의 다양한 발전수준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이 필요함 4) 관련 주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 투명, 책임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향후 INB 회의를 통해 이같은 개념이 보다 정제되고, 명확화되며, 잠정적으로 합의될 수 있기를 희망함. 또한 사무국이 2021년 11월 WHO 특별세션 부터의 INB 논의결과를 기록화 및 관련 용어집을 회원국에게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
-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그룹 대표발언) 병원체 접근성 및 이익공유에 대한 12조 내용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우려스럽고, 아직까지 합의된 법적 문안이 없음에 우려를 표함. 12조와 그 외 12조와 관련된 다른 조항 간 연결점을 본 조약 중추로 보고,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할당해줄 것을 요청함. 아프리카그룹은 미래 글로벌 보건시스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제안이 문안 내 표현되길 희망함. 자금조달메커니즘을 확립함으로써 보건 및 관리인력 할당, 전반적 보건의료시스템 인프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기술이전, 다양화된 생산이 팬데믹 발생시 팬데믹 관련 제품에 대한 공평하며 시기적절한 접근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음. 이번 회의에서는 팬데믹 조약의 주요 내용인 2장과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인 3장에 있어 큰 진전이 있을 것임. 첫째주 후반부나 둘째주 월요일에 진행상황을 검토할 시간을 할당해줄 것을 요청함. 만약 서브그룹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해당 조항을 초안작성그룹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제안함.
- (인도, 동남아지역 대표발언) 협상과정에서 다음을 촉구함. 1) 형평성은 본 조약 기본원칙으로서 논의를 위한 핵심이 되어야함. 개도국이 국민적들에게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2) 팬데믹 조약에 대한 WHO의 중심적 역할을 유지해야 함. 이는 보다 나은 이행, 모니터링, 책임을 위해서, 또한 타 국제기구 및 다자기구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3) 조약 이행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명확한 책임과 역할이 규정되어야 함. 4) 각 회원국의 의무와 책임을 논의할 때, 협상되지 않은 기준과 지침을 언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5) 절차적 측면에서 비엔나협약에 따라 본 협상 논의 경과(역사)를 기록할 위원회 설치를 제안함
- (중국) 최근 회람된 새로운 문안과 관련, 개도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3장에 CBDR이 다시 포함된 점을

환영함. 중국은 PABS가 일원화된 다자간 시스템으로 구축되길 지지함. 병원체에 대한 회원국의 주권과 소유권을 존중하는 기반위에서, 회원국 주도의 투명하고 공평한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임. 개정된 IHR과 본 팬데믹 조약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INB-WGIHR 간 협업을 보다 촉진하길 제안함.

- (EU) 성공적 협상을 위해서는 팬데믹 PPR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에서 의미가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며, 팬데믹의 전주기를 고려해야 함. 우리는 팬데믹 예방 및 대비, 원헬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며 의미있는 조항을 요구함. 가장 취약한 지점에 있는 국가,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또한 본 조약 협상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에 대한 협력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봄.
- (러시아) 2024년 5월이라는 기한을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주요 위협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함. 포괄적 시스템을 만들고자 지나치게 많은 조치들이 하나의 문서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틀 정도 합의를 하고,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protocols to the convention 안에서 개발되어야 함.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에, 성공사례가 있음.
- (일본) 본 협정은 팬데믹 PPR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과도한 규정을 둔다든지 하는 팬데믹 PPR을 저해하는 내용은 지양함이 바람직함. 본 조약에 대한 각 회원국 지위의 보편성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필수적임. 팬데믹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또한 12조를 포함한 조약의 모든 조항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촉진해야 함.
- (미국) 새로운 팬데믹 조약은 글로벌 보건안보를 한 걸음 발전시킬 수 있는 야심차면서도 실질적이며, 실행가능해야 한 내용이 되어야 함. 5월 마감일까지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이번 차수 회의에서 중요한 핵심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할 것임. 본 협상의 타결은 형평성에 대한 오랜 약속과 글로벌 공중보건을 위해 노력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과제이기도 함. 협상에 어려운 역학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마감기한을 생각했을 때 회원국간 입장차를 줄여야 할 것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유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색 중이며, 다른 회원국들도 이렇게 하길 기대함. 최빈국에게 팬데믹 관련 제품에 대한 적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12조 9항에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음. 팬데믹 기간 중, 보다 공평한 대응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어 각국 정부와 산업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길 기대함.
 - 팬데믹 위협에 대한 신속한 감지와 정보의 광범위한 공유는 중요함.
 - 팬데믹의 건강(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단, 백신, 치료법의 신속한 공유가 중요함. 광범위한 공유 시스템이 오히려 새로운 장벽이 되어 병원체와 데이터 공유를 방해해서는 안될 것임.
 - 팬데믹 PPR자금이 가장 필요한 곳(최빈국)에 자금이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금조달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 진전에 감사하며, 미국도 기존의 자금조달 기관을 고려하여 본 조약의 19, 20조가 구성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7조(보건의료 및 관리인력) drafting group 논의

- ✓ 선진국 그룹 및 일부 남미국가들은 성차별에 대한 언급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음.
- ✓ 아프리카그룹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주로 3항에 국제 규범 및 기준이 아닌 ‘WHO 실천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 다수 개도국 및 선진국에서 인력의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음. (브루나이는

ILO의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지침을 참조로 달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개념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	
✓ 많은 회원국이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를 주장하는 중에, 미국이나 중국 등은 팬데믹 PPR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저야 할 의무에만 집중하여 문안을 간소화시킬 필요성을 주장했음.	
③	WHO 제 8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8)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2.20.(화)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 1장 (1조 용어의 사용, 2조 목적 및 범위, 3조 지침원칙 및 접근법) drafting group 논의:	
1조 용어의 사용 ✓ 다수 선진국 및 개도국은 인포데믹이 문안에서 한 번만 등장하므로, 이 정의는 18조(커뮤니케이션)로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언급함. ✓ 개도국 그룹은 원헬스 정의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OH)’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함. ✓ EU는 원헬스를 3장 지침원칙 및 접근법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캐나다, 미국, 칠레, 브라질은 이에 대해 지지 의견을 표명함. ✓ 선진국 그룹은 팬데믹 관련 제품 정의를 팬데믹 관련 보건제품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필리핀 등은 형평성 그룹의 정의를 언급하며 PHEIC상황에 필요한 모든 제품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언급함. 다수 회원국에서 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각 조에서 제품이 어떻게 언급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용어 정의를 1조에서 보다 상세히 할 것을 주장하였음. ✓ 다수 회원국에서 ‘보건인력’ 용어는 7조 ‘보건 및 관리 인력’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일부 대표단은 얼마 남지 않은 기한을 생각했을 때, 이제는 조약의 실질적 실행 측면에서 정말로 필요한 용어의 정의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함.	
2조 목적 및 범위 ✓ EU,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선진국과 시리아, 인도는 2장 2항에 ‘본 조약이 항상 적용된다’는 문구 관련, 항상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함. 이렇게 언급된 다른 국제조약이 없다고 말했음. 반면 개도국그룹은 팬데믹 기간뿐만 아니라 팬데믹 간(interpandemic) 기간에도 본 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2항 유지를 주장했음. 사무국 법률전문가는 2항을 삭제시 해석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였음(팬데믹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 있음) ✓ EU는 2장 1항에서 인권을 강력하게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일부 국가는 인권은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지금 문안과 같이 ‘건강권’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주장함.	
○ 4장 (팬데믹 예방 및 공중보건 감시), 5장(원헬스 접근법), 6장(보건시스템 준비성, 회복력, 복구) subgroup 논의:	
✓ 다수 개도국과 선진국은 4-5조의 간소화를 주장하였음. EU, 영국을 포함한 다수 선진국은 원헬스가 팬데믹 예방, 전반적 팬데믹 PPR과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들어 5조의 별도 조항으로 분리가 필수적	

임을 언급함. ✓ 다수 개도국은 4~6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이 있어야 함을 주장(명확한 자금조달 메커니즘 명시 안된다면 수용 불가). 일부 개도국은, 따라서 의무 수준으로 두기보다 자발적 조치 수준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선진국은 이러한 의무는 징벌적 의무의 차원이라기보다,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든다는 차원, 팬데믹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팬데믹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임을 강조함. 노르웨이 포함 일부 선진국은 이행을 위해서는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조에 19,20조를 같이 포함하여 언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음. ✓ 선진국 위주로 4조에 AMR이 포함된 점을 환영하였으나, 일부 개도국은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의 부족 문제를 언급함 ✓ 4조 마지막 부분 부속서 포함과 관련한 쟁점이 존재함	
④	WHO 제 8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8)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2.21.(수)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 12조(ABS) 서브그룹 논의: ‘PABS Coverage’ ✓ 많은 선진국은 현재 문안에서 PABS 범위가 광범위하며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였음 ✓ 일부 선진국은 PABS 시스템 자체에 회의적 입장을 보임. ✓ 선진국 그룹은 PABS 병원체 범위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었음. 개도국은 최대한 늘리자는 입장이었음. 생물학적 물질 및 유전체 염기서열데이터(Genetic sequence data, GSD)를 확장된 개념으로 보는 일부 개도국 입장도 있었음 ○ 12조(ABS) 서브그룹 논의: ‘접근’ 및 ‘이익공유’ ✓ 일부 개도국은 3.2(제품생산자가 아닌 상업적 사용자)와 3.3(비상업적 사용자)에 대해서도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통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함을 주장함(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얻고 있다면 이익을 공유해야 함). 선진국은 데이터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많은 익명의 사용자를 어떻게 추적할 것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이익을 청구할 것인지가 애매모호을 지적함. ○ 10조(지속가능한 생산), 11조(기술 및 노하우 이전), 13조(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 서브그룹 논의: 10조와 13조에 대한 논의만 진행. 10조 1항 ✓ 중국 및 개도국 그룹은, 1항 두문에 ‘공평한 접근’에 더불어 ‘공평하며 적시의 접근’ 언급을 주장함. ✓ 개도국그룹은 1항 두문의 ‘shall endeavor to’ 및 2항 ‘is encouraged to’ 등을 보다 강제력이 높은 shall로 변경할 것을 주장함. 반대로 선진국 그룹은 조약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현재 문안대로의 유지(shall endeavor to, is encouraged to)가 적절하다고 발언함 ✓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1(c)에서 지나치게 다양한 구체적 조치(‘보조금, 대출, 혼합 금융, 세제, 기타 인센티브 및 촉진 조치’)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함. 반면 개도국(브라질 등)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므로 구체적 적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1(e)에서 11조 2항 참조문제 관련, 미국이나 일본은 삭제를 제안했으나 방글라데시, 멕시코 등 개도국은 기술이전의 실질적 촉진을 위해서는 11조 2항 참조를 통한 다자간 메커니즘 언급이 필요하다고	

고 주장함

- ✓ 1(g) 관련, 미국, 호주, EU, 노르웨이 등 선진국은 단순 생산시설 건립만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이 문안에서 지금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음. 개도국 그룹도 이에 동의하며, 기술개발이나 역량강화는 본 조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영역이라고 발언함.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허브(Global Training Hub for Biomanufacturing, GTH-B)가 WHO가 국제협력을 통해 현지 생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 좋은 전략 중 하나라고 말함.

10조 2항

- ✓ 다수 선진국과 중국은 본조에서 글로벌 질병부담연구 언급의 모호성을 언급함. 방글라데시는 연구에 대한 것은 9조로 이동한다면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을 제안함.

13조 공급망 네트워크 조항의 1~3항

- ✓ 미국은 MCM 조달, 할당, 분배에 대한 네트워크'로 명명을 변경함으로써, 명명에 있어 scope를 줄일 필요성을 언급함.
- ✓ 선진국그룹은 네트워크(파트너십)의 거버넌스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그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 ✓ 개도국그룹은 3(b) raw material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⑤	WHO 제 8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8)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2.22.(목)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 9조(연구 및 개발) drafting group 논의

- ✓ 선진국은 9조는 연구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만 초점 맞추고 제품에 대한 내용은 11조, 13조로 이동이 바람직함을 주장. 그러나 개도국은 연구의 최종 outcome인 제품을 반드시 9조에서 언급하는 것이 연구의 모든 lifecycle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14조

- ✓ 대부분 회원국이 미국이 담당한 본 조 문안 간소화 작업에 감사를 표함.
- ✓ 개도국그룹은 개도국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조달메커니즘을 제대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함

○ 19조(이행역량 및 지원), 20조(자금조달) 서브그룹 논의

- ✓ 아프리카 그룹은 IHR core capacity 개발 및 팬데믹 PPR을 위한 하나의 통합된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 선진국 그룹은 기존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된다고, 당사국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존 메커니즘을 통해 팬데믹 PPR을 할 수 있다고 말함. 반면 다수 개도국은 기존의 자금조달 메커니즘은 WHO 회원국에게 권한이 있지 않으며, 이것 만으로는 팬데믹 PPR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없다고 반박함.
- ✓ '지속가능한' 자금조달로 20조 제목을 변경할 것을 아프리카 그룹이 제안함. 이에 대해 선진국 그룹

은 ‘지속가능한’ 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용어이므로 이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말함. ✓ 선진국 그룹은 국내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하고 지속가능하다고 말함. 반면, 개도국 그룹은 국내 상황에 따라 팬데믹 PPR을 위한 국내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주장함	
⑥	WHO 제 8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8)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2.23.(금)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 Joint plenary of INB and WGIHR: 다음 4가지 주제에 대해 개정 IHR 및 팬데믹 조약 간 일관성, 상호보완성 달성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음(각 주제에 대한 두 의장단의 제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을 듣는 시간) a. Public health alert –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 – pandemic continuum 각각의 정의, 기준 및 결정과정 b. 팬데믹 예방, 대비, 감시 및 원헬스 c. 형평성의 이행 및 자금조달 d. 모니터링 및 보고 a. Public health alert –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 – pandemic continuum 각각의 정의, 기준 및 결정과정(WGIHR과 INB의장단은, 이 문제를 주로 WGIHR 논의와 텍스트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하며, INB에서는 적절한 경우 수정된 IHR을 참조할 것을 제안함) - (모나코) 각각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의는 IHR과 팬데믹조약 간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논의가 된다고 생각함. IHR은 PHEIC을 선언하도록 하는 전문 도구이며, 팬데믹은 PHEIC 중 하나이기 때문에 IHR과 팬데믹조약 간에는 공통적 보완성, 연속성이 필요함. 우리는 IHR이 우선적으로 각각에 대한 핵심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 팬데믹 선언도 IHR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함. - (중국) WGIHR에서는 ‘팬데믹 비상사태(Pandemic emergency)’에 대한 정의만 되어있음. 팬데믹 조약에서는 ‘팬데믹’을 논하는데, 이 두가지 용어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됨. IHR에서 팬데믹 비상사태는 공중보건경보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PHEIC과 같은 의도로서 사용됨), 팬데믹 조약에서는 팬데믹이 경보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팬데믹 전반을 준비하고, 대응하고, 형평성 문제를 염두에 둔 근본적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문서에서 각각 팬데믹 비상사태와 팬데믹을 언급하는 목적 자체가 다름. 따라서 IHR에서는 ‘팬데믹 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만을 상호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단지 이것만으로는 팬데믹 조약에서 언급되는 ‘팬데믹’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봄. - (파키스탄) IHR에서 팬데믹 비상사태 정의를 내리고, 단순히 팬데믹 조약에서 이를 참고하여 팬데믹을 정의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님. 팬데믹 비상사태는 그 자체로, 특정 시점(예: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증가한 상황에서)에서 경보나 선포를 내리는 것임. 그러나 팬데믹은 더 장기간을 의미하는 개념임. 따라서 팬데믹 조약에 팬데믹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있어야 하고, 이가 IHR에 교차 참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정의 문제는 팬데믹 조약 내 ‘제품’과 관련된 조항과도 연결됨(팬데믹 관련제품 및 팬데믹 비상 관련 제품에 대한 내용). 결론적으로, 경보의 관점에서는 IHR에서 팬데믹 비상사태 정의를 남겨두는 것이 낫고 그 이상을 의미하는 용어는 IHR이 아닌 팬데믹 조약에	

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함.

-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공동발언) 두 의장단의 제안을 지지함. 다만 공중보건경보(Public health alert)와 관련해서는 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조치가 수반되는지, 그 영향은 어떤지를 보다 확실히 알려주었으면 좋겠음. 주로 정의를 IHR에서 내리고 INB에서는 IHR을 참조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IHR에 수정된 사항들이 INB(팬데믹 조약)에 적합한지 지속적으로, 전문 지식에 따라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 (미국) 팬데믹 조약만을 위해 팬데믹 비상사태 정의를 새롭게 내릴 필요는 없음. 일련의 기준에 따라 팬데믹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은 사무총장의 권한이며, 그 기준은 IHR에서 명시하면 됨. 덧붙여 팬데믹 조약에서 별도로 팬데믹 정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에도 확신할 수 없음.
 - (일본) 정의는 WGIHR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팬데믹 조약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INB에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 팬데믹 정의가 WGIHR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무국 제안을 지지함. WGIHR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되길 희망하며, WGIHR에서 팬데믹 정의 논의시에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세부사항 고려가 필요함
 - 우선, 팬데믹 비상사태의 경우 1) PHEIC에서 팬데믹 비상사태로의 전환 시점, 2) 팬데믹 비상사태를 구성하는 상황적인 구성요소, 3) 팬데믹 비상사태 선언시 따라야 할 조치
 - 다음으로, 조기 행동 경보의 구성요소로서 선언의 과정, 경보 또는 선언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가 고려되어야 함.
 - 그러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조치는 WHO사무국의 인적,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야 함
 - (결론) 의장단은 자신들의 제안을 지지해준 회원국에 감사하며, 제한된 시간을 생각했을 때 WGIHR에서 정의를 집중하여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함. WGIHR에서 논의되는 정의에 대한 사항이 INB 회원국에게도 목록을 통해 공유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b. “유행성 예방, 대비, 감시, 원헬스(One Health)” 주제 관련 의장단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 o 공중 보건 감시는 주로 WGIHR의 토론회 문서 협상을 통해 다루어지며 INB 프로세스는 IHR 핵심 역할을 참조함.
 - o 원헬스 및 인간-동물-환경 인터페이스는 수정된 IHR을 참조하여, 주로 INB의 토론회 및 텍스트 협상을 통해 주로 다루어짐
-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그룹 대표발언) 의장단의 첫 번째 제안에는 동의함(단, IHR을 참조하되 IHR 핵심역량에만 한정하여 INB논의를 진행하는 것에는 반대함). 다만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인간-동물-환경 인터페이스 논의가 INB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가 수정된 IHR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수정된 IHR을 참조한다는 언급에는 동의할 수 없음.
 - (미국) 공중보건감시가 주로 WGIHR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함. INB에서는 팬데믹 조약에 필요할 시 WGIHR 작업을 참조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함
 - 원헬스와 인간-동물-환경 인터페이스가 INB에서 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함. 그러나, 수정

된 IHR에 이와 관련하여 참조될만한 내용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알 수 없음. 원헬스에 대한 어떤 사항은 WGIHR이 아닌 INB안에서만 논의되어야 할 수도 있음. 따라서 두 번째 항에는 ‘as appropriate’ 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함.

- (영국) IHR에서 완전히 다루어지지 않는 감시의 영역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주로’ 라는 단어가 포함된 점은 적절하다고 생각함

• 미국 의견에 동의하며 두 번째 항에 ‘as appropriate’ 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봄

- (중국) 감시가 주로 WGIHR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함. 그러나 현재 IHR 5조는 감시 관련 주요 우려사항을 다룰 수 없음(역량 요구사항, 지원 요구사항, 무엇이 좋은 감시 시스템인지, 무엇이 좋은 협력적 감시시스템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INB안에서도 논의되어야 함. 첫 번째 문단에서도 ‘as appropriate’ 또는 ‘as necessary’ 추가를 제안함.

• 원헬스가 주로 INB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항은 동의함

- (일본) 다른 회원국 언급처럼, ‘as appropriate’ 또는 ‘as necessary’ 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결론) 의장단은 as appropriate를 추가하고, 첫 번째 항에서 IHR 핵심역량은 삭제하기로 하였고, 회원국은 이에 동의함

c. ‘형평성 이행 및 자금 조달’ 주제 관련, 두 의장단은 INB 및 WGIHR 두 프로세스를 모두 지원하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자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이는 주로 INB의 토론 및 문안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WGIHR은 적절히 팬데믹 조약을 참조함. 그 이외의 형평성 및 이행 지원에 대한 논의는 두 프로세스에서 모두 지속됨.

-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그룹 대표발언) 자금조달 논의를 INB에만 국한하는 것에는 반대함. 두 프로세스 모두에서 자금조달을 논의해야 함. 팬데믹 조약과 개정된 IHR의 발효와 함께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기능이 시작될 것이므로, 자금조달 관련하여 상호참조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보츠와나: 덧붙여, 자금조달을 논의하는 각각의 문서 내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함: • 팬데믹 조약 조항: 특히 9, 10, 11, 12, 13, 19, 20조/• 개정된 IHR 조항: 특히 13조, 신규 13A조, 44조, 신규 44A조, Annex 1, 신규 Annex 10)

- (EU) 두 프로세스를 모두 지원하는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자금조달에 대한 같은 논의를 두 논의구조에서 병렬적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자금조달 논의를 INB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 의장단 제안문의 원안을 지지하며, 아프리카의 제안대로 제안문이 수정된다면 불필요한 병렬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어서 우려스러움

- (미국) 앞의 a, b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조인트세션에서 각 주제가 어떤 논의구조(WGIHR 또는 INB)에서 논의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토론하였음. 자금조달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과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주로 INB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형평성 구현의 중요성 차원에서 두 논의구조에서 모두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는 하지만, 병렬적 논의는 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할 뿐임. 다만, 의장단 제안처럼 INB와 WGIHR모두를 지원하는 하나의 자금조달

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지지함.

- (브라질) 자금조달이 INB에서 주로 논의되어야하며, WGIHR과 INB를 둘다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자금조달 메커니즘이 구성되어야 함에 동의함. 다만, 보츠와나 언급처럼 팬데믹 조약과 IHR의 구체적인 조항을 언급하는 안을 지지함.
- (한국) EU 제안처럼, 병렬적 논의를 피하고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INB에서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주로 논의하는 것을 지지함. 형평성은 INB와 WGIHR 모두에서 광범위한 영역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포괄하기 때문에, 두 프로세스 모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지함. 결론적으로 한국은 의장단 제안문 원문을 지지하며, 이가 향후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함.
- (결론) EU, 노르웨이, 독일, 멕시코, 칠레, 미국, 한국, 일본은 의장단 문안 원안을 지지했으나(재정논의는 INB에서 진행하며 INB와 WGIHR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재정메커니즘 수립이 필요), 아프리카 그룹은 두 논의구조 모두에서 자금조달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언급함. 의견 조율 불가로 의장단은 이 제안문을 철회(withdraw)함. 철회란, 본 조인트 세션이 자금조달에 대한 WGIHR과 INB의 그간의 논의 흐름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음을 의미함.

d. “모니터링 및 보고” 주제와 관련하여 의장단은 WGIHR과 INB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INB의 8차 회의 이후 WGIHR과 INB가 조정된 접근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일관되고 지속적이며,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지원하며 현재 IHR 리포팅 방식에 기반하여 처리할 것을 제안함.

- (콜롬비아) ‘모니터링 및 보고’에 더불어 ‘거버넌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INB와 WGIHR 간 공동으로 운영해야 할 기구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행 및 준수위원회’인데, 이 문제가 WGIHR에서 아직 잘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우리가 거버넌스를 포함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INB와 WGIHR 간 공동 작업의 필요성이 포함됨(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에콰도르, 미국 동의)
- (싱가포르) d에 대한 의장단의 제안을 지지하나, 콜롬비아의 거버넌스 추가 안을 지지함. 두가지 문서의 모니터링 및 보고에 있어 중복을 방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일관된 접근방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임.
- (EU) ‘조정된(coordinated) 접근방식’ 보다는, ‘공동의(joint) 접근방식’이 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함(미국이 이에 동의. 브라질 및 방글라데시는 joint는 의미가 모호하다며 반대).
- (일본) 의장단 제안 원문이든, 거버넌스를 포함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오늘 논의는 모니터링과 보고에 초점을 두어야 함. 거버넌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는 모니터링과 보고와는 또다른 문제이기 때문임(미국 및 방글라데시가 여기에 동의)
- (모나코) 거버넌스를 포함하는지 여부에는 유연한 입장임. 그러나 모니터링 및 보고 문제는 WGIHR과 INB 각각에서 모두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IHR은 이미 존재하는 문서이나, 보고 메커니즘은 부실함. INB에서 보고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참고한다면 IHR 보고 메커니즘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 조정된/공동의 접근방식을 가진다면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이 양쪽에서 모두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미국) 거버넌스 포함을 찬성함. EU의 공동의 접근방식 수정안도 찬성함. 팬데믹 조약에 있어 이행 및 준수위원회를 이야기하면서, IHR에 대한 이행 및 준수위원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음. 또한 IHR에서 제시되는 글로벌 동료 심사 메커니즘 논의시, 이는 팬데믹 조약 8조의 맥락에서도 논의될 수 있음. 둘다 글로벌 동료 심사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임. 그런데 모니터링 및 보고 문제가 거버넌스 문제와는 다르다는 의견도 존중함.
 - (칠레) 거버넌스 포함에 대한 회원국 간 논쟁이 이어지자, 칠레는 d는 모니터링 및 보고라는 주제로 그대로 두되, 별도의 e파트를 신설하여 거버넌스를 논의하자는 안을 제시함.
 - (결론) 사무국은 WGIHR과 INB에서 논의되는 모니터링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이 80% 이상 일치한다고 보았기에, 보고에 있어 하나의 메커니즘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d를 안건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함. 안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장단은 이 제안문 또한 철회(withdraw)함. 철회란, 본 조인트 세션이 자금조달에 대한 WGIHR과 INB의 그간의 논의 흐름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음을 의미함.
- 조인트세션을 마무리하며, 사무국 법률전문가의 소개 하에, 회원국들은 개정 IHR과 팬데믹 조약 수립에 대한 제 77차 WHA 결의안을 각각이 아닌 한 개로 올리는 것에 동의함.

○ 12조(ABS) 서브그룹 논의: ‘annual monetary contribution’에 대한 부의장 및 공동진행자(cofac)의 제안문(회의 현장에서 즉석으로 공유된 문서)에 대한 논의

- ✓ 선진국 및 개도국 대부분이 즉석에서 제시된 문안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하다며 검토할 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함
- ✓ EU는 PABS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얼마 드는 지에 따라서 출자를 해야 하는 주체들이 시스템에 참여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음. 대부분의 기여금이 회원국이 아니라 민간 주체들에게 출자될텐데, 얼마를 출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민간 주체들이 PABS 시스템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함.
- ✓ 개도국은 우선순위가 높은 당사국에 초점을 맞춰 기여금 산출식을 내준 것에 대해 환영함.

○ 12조(ABS) 서브그룹 논의: ‘이행 및 거버넌스’

- ✓ 개도국 그룹은 “PABS가 나고야 의정서 4.4조의 전문적 국제기구(Specialized international instrument, SII)로서 간주된다”라고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언급. 반대로 선진국 그룹은 나고야 의정서 SII로서 간주된다는 것 언급 안하면, 같은 목적의 시스템이 병렬적으로 있게 되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함
- ✓ 개도국은 PABS가 자동적으로 즉시 발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 부의장은 이 문서는 개념적 문서고, 추후 법적 문서로 변환될 것이라고 했음.

⑦	WHO 제 8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8) 회의 2주차 회의 대응을 위한 대표단 내부 논의
일 시	2024.02.24.(토)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12조 PABS 관련 회원국 간 주요 이견 정리 (민간 기여금)	

⑧	WHO 제 8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8) 회의 2주차 회의 대응을 위한 대표단 내부 논의
일 시	2024.02.25.(일)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12조 PABS 관련 국내 관련 부처 의견 수렴하여 발언문 작성 방향 논의 3조 CBDR 원칙 및 9조 연구 및 개발 관련 국내 관련 부처 의견 기반으로 발언문 작성 방향 논의	
⑨	WHO 제 8차 팬데믹 협약 협상(INB 8) 회의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4.02.26.(월) 09:00-12:30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주제네바대표부 이민원 공사참사관 및 이하경 전문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 신지영 부연구위원
○ 3장 21조(Governing Body) ✓ (사무국) 이미 WHA A위원회의 어젠다가 매우 과중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나 팬데믹을 다루는 분리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위원회는 그동안 관심을 받지 않았던 주제들을 좀더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음. 세 개의 위원회를 두되 한번에 2개 이상의 위원회를 열지 않는 식의 규정을 둘 수도 있음. ✓ WHO CA+의 Governing Body를 WHA의 세 번째 위원회로 돌지, 별도의 위원회로 할지에 대한 사무국과 회원국 대표단 간 질의 응답이 이어짐	
⑩	제네바 출발/인천 도착
일 시	2024.02.26.(월) - 2024.02.27.(화)
장 소	제네바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참석자	-
제네바국제공항 출발, 인천 도착 및 귀국	

장소

WHO 본부 회의장 및 회의 중계 화면

